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해양수산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신규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공항·항만·철도 등이 집적된 주요거점에 물류에 기반한 제조·연구 등 고부가가치 활동 촉진을 위한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민홍철 의원)이 제정됨(2026.4.7.)에 따라, 제정 법률의 시행시기에 맞춰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기본계획(안 제2조)

국제물류진흥지역기본계획 변경 시 의견청취·관보고시 등 절차를 거치지 않는 ‘경미한 사항’으로 단순오기 등 명백한 오류·법령제정 등에 따른 내용변경·기본계획의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을 규정함

나.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등(안 제3조~제12조)

지역지정·변경·지정해제의 절차·제출서류 및 변경지정의 ‘경미한 사항’을 규정하고 국제물류진흥지역의 지정요건을 규정함. 또한, 국제물류진흥지역발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및 변경 시 ‘경미한 사항’을 규정함.

다. 기업지원(안 제13조)

국가·지자체가 우선 지원하는 기반시설의 범위·지원 내용을 구체화함.

라. 규제특례(안 제14조~제25조)

규제의 신속확인·실증특례·임시허가의 신청·변경 등 절차를 규정하고 규제특례의 대상인 물류관련사업의 범위를 구체화함. 또한, 실증특례 또는 임시허가를 받은 자가 의무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마. 정보플랫폼(안 제26조 및 제27조)

국제물류진흥지역 정보플랫폼 전담기관의 지정 절차·기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함.

바. 보칙(안 제28조 및 제29조)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업무로 규제특례의 신청 등 접수 및 결과 통보를 규정하고 과태료 부과기준을 구체화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부처와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별표, 별첨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국제물류진흥지역기본계획의 수립 및 국제물류진흥지역의 지정 등

제2조(국제물류진흥지역기본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6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변경하는 경우
2. 단순한 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기본계획의 기본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변경 근거가 분명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제3조(국제물류진흥지역의 지정신청) ① 시·도지사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진흥지역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이하 “공동부령”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법 제8조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제물류진흥지역발전계획(이하 “국제물류진흥지역발전계획”이라 한다)
2.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주민의 의견청취 결과
3. 국제물류진흥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4. 그 밖에 국제물류진흥지역의 지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제출을 요구하는 자료

②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신청 내용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4조(국제물류진흥지역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법 제8조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한다)은 국제물류진흥지역의 지정신청을 받으면 90일 이내에 국제물류진흥지역발전계획의 확정과 국제물류진흥지역의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다만, 제3조제2항에 따라 자료 보완에 걸린 기간은 해당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제물류진흥지역의 지정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1. 제3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보완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2. 법 제10조제2항, 이 영 제9조에 따른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신청 등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③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국제물류진흥지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5항 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같은 조 제7항에 따라 국제물류진흥지역을 변경지정한 경우에는 변경된 사항을 말한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국제물류진흥지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2. 국제물류진흥지역의 지정 목적
3.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4. 국내외 기업 및 연구개발기관 등의 유치에 관한 사항
5. 국제물류진흥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6.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7. 그 밖에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국제물류진흥지역발전계획에 관한 협의) ① 법 제8조제3항 전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법 제8조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한다)으로부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

정기관의 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국제물류진흥지역발전계획의 확정 또는 변경에 관련하여 협의기간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협의기간 내에 회신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 및 회신기한을 명시하여 통보하고 그 기한 내에 의견을 회신하여야 한다.

제6조(국제물류진흥지역 변경지정의 경미한 사항) 법 제8조제7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국제물류진흥지역 면적을 10퍼센트 범위에서 증감하는 경우
2. 총사업비의 범위에서 연차별 투자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3. 다른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는 경우
4. 그 밖에 계산 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는 경우

제7조(국제물류진흥지역의 지정요건) 법 제9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교통·통신 기반시설 및 생활여건 등에서 필요한 전문인력의 확보 계획이 있을 것
2.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사회·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

건을 저하시키지 아니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을 것

3. 그 밖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

제8조(국제물류진흥지역발전계획의 내용) ① 법 제10조제3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해당 국제물류진흥지역의 정책목표 및 성과지표
2. 국제물류진흥지역 내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에 관한 사항
3. 국민의 생명·안전에 위해가 되거나 환경을 현저히 저해하는 행위 방지와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 등을 위한 처리 방안
4. 국제물류진흥지역토지이용계획(수립이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5. 국제물류진흥지역에 적용되는 규제특례와 그 필요성 및 적용범위
6. 국제물류진흥지역 및 인근지역의 부동산가격 안정방안
7. 그 밖에 국제물류진흥지역의 지정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국제물류진흥지역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와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1. 국제물류진흥지역의 위치를 표시한 축척 2만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
2. 국제물류진흥지역의 경계를 표시한 지적도나 임야도

③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법 제8조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한다)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도

지사에게 국제물류진흥지역발전계획에 포함될 사항을 추가로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주민의 의견청취) ① 시·도지사는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국제물류진흥지역발전계획을 작성하거나 변경하기 위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하며, 해당 특별시·통합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공고한 날부터 14일 이상 관할 지역의 주민이 그 서류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대상의 명칭·위치 및 면적
2. 국제물류진흥지역발전계획의 주요 내용
3. 관계 서류의 열람기간 및 열람방법

② 제1항에 따라 공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주민은 제1항에 따른 열람기간 내에 시·도지사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국제물류진흥지역발전계획에 반영할 것인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의견을 제출한 주민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법 제10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행정구역의 변경 등으로 인한 해당 국제물류진흥지역의 명칭 변경

2. 국제물류진흥지역의 면적 변경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국제물류진흥지역의 총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10만 제곱미터 미만의 면적 변경

나. 국제물류진흥지역의 총면적이 10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국제물류진흥지역 총면적의 100분의 10 미만의 면적 변경

3. 지형이나 지질사정으로 인한 주요 기반시설계획의 변경

4. 물가상승 등으로 인한 사업비의 증감

5. 그 밖에 발전계획의 목적 및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서 변경 근거가 분명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제10조(국제물류진흥지역의 지정해제) ①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당시에 예상하지 못한 사정 변경으로 인하여 공익상 특히 필요한 경우

2. 기업유치의 현저한 부진 등으로 상당한 기간 내에 국제물류진흥지역의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②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법 제8조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한다)은 국제물류진흥지역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법 제12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8조제5항 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 관할 시·도지사에게 즉시

통보하고, 해당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1. 국제물류진흥지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2. 국제물류진흥지역의 지정해제일 및 지정해제사유

③ 법 제12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8조제6항에 따른 관계 서류 사본의 공람기간은 14일 이상으로 한다.

제11조(국제물류진흥지역에 관한 중요 정책의 심의) 법 제13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국제물류진흥지역 관련 정책 및 제도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국제물류진흥지역 내 실증특례의 부여·변경 및 구역·기간 등 심의 및 의결에 관한 사항
3. 국제물류진흥지역 내 임시허가의 부여·변경 및 기간 등 심의 및 의결에 관한 사항

제12조(행위허가의 대상) ① 국제물류진흥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관할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토지의 형질변경: 절토(땅깎기)·성토(흙쌓기)·정지(땅고르기)·포장(흙덮기)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토지의 굴착(땅파기) 또는 공유수면의 매립
2. 건축물의 건축: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건축,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

3. 공작물의 설치: 인공적으로 제작한 시설물(「건축법」 제2조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설치
 4. 토석의 채취: 흙·모래·자갈·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다만, 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1호에 따른다.
 5. 토지의 분할 및 합병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옮기기 쉽지 않은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 ② 법 제14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아닌 행위를 말한다.
1. 농림수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것으로서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간이공작물의 설치
 2.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3. 국제물류진흥지역의 개발에 지장을 주지 않고 자연경관을 손상하지 않는 범위에서의 토석 채취
 4. 국제물류진흥지역에 존치하기로 결정된 대지에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5. 경작지가 아닌 토지에 관상용 죽목(竹木)을 임시로 심는 행위

제3장 국제물류진흥지역에 대한 지원 및 특례

제13조(기반시설에 대한 우선 지원) ① 법 제16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

자치단체가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기반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제물류진흥지역을 외부와 연결하는 고속국도·일반국도·특별시·도·광역시도·지방도 및 국가지원지방도
2. 국제물류진흥지역 안의 간선도로
3. 철도·도시철도 및 공항·항만시설
4. 공원·녹지
5. 공동구·상하수도 및 폐기물처리시설
6. 그 밖에 국제물류진흥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우선 지원이 필요하다고 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기반시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의 기반시설에 대하여 건설비용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이를 재정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국제물류진흥지역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건설비용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전액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제2항에 따라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제14조(규제의 신속확인 요청 등)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물류사업 및 제조·연구 등 물류관련 사업(이하 “물류사업등”이라 한다)과 관련된 규제의 존재, 적용 여부 및 해석 등을 확인(이하 “규제확인”이라 한다)받으려는 자는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규제확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법 제8조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서류는 해당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1. 물류사업등에 대한 설명서
2. 제1호와 관련하여 규제확인이 필요한 법령 등의 내용
3. 규제확인을 신청하기 전에 물류사업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허가·승인·인증·검증·인가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신청했으나 허가등을 받지 못한 경우 그 관계 서류

②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규제확인 신청을 받은 사항 중 국토교통부 및 해양수산부의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규제확인을 요청한 자로부터 신청서 사본 및 첨부서류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규제확인을 하여 규제확인을 요청한 자에게 통보해야 하고,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 사항인 경우에는 그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신청서 사본 및 첨부서류를 보내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7조제2항 및 제6항에 따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회신받은 의견 및 규제확인 결과를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규제확인을 요청한 자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

제15조(물류 관련 사업의 범위) ① 법 제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 관련 사업”이란 국제물류진흥지역에서 수행되는 사업으로서, 물류와 연계된 제조·가공·연구개발·실증·정보처리·시설운

영·장비운영·기술서비스·컨설팅·교육훈련·사업화 지원 등 물류 사업과 기능적·공간적 또는 산업적으로 연계되어 물류 효율성 제고, 물류 부가가치 창출, 물류기술 혁신·선진화 또는 지속가능성 확보에 기여하는 사업을 말한다.

② 제1항의 물류 관련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물류사업과의 연계성,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목적과의 부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제16조(실증을 위한 특례의 신청 등)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진흥지역에서 물류 신기술·기반시설·서비스를 활용하여 물류사업등을 하려는 자가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이하 “실증특례”라 한다)를 신청하는 경우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실증특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법 제8조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물류사업등과 관련한 물류 신기술·기반시설·서비스의 시험·검증을 위한 실증계획서
2. 물류사업등과 관련한 물류 신기술·기반시설·서비스가 법 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설명하는 자료
3. 법 제18조제5항에 따른 실증특례의 심의를 위해 필요한 자료
4. 그 밖에 실증특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등이 제출을 요구하는 자료

② 제2항제1호의 실증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물류사업등과 관련한 물류 신기술·기반시설·서비스의 시험·검증을 위한 목적과 개요
2. 물류사업등과 관련한 물류 신기술·기반시설·서비스의 명칭·내용 및 관련 법령
3. 물류사업등과 관련한 물류 신기술·기반시설·서비스의 시험·검증을 위해 필요한 실증특례 내용 및 시험·검증 방법
4. 물류사업등과 관련한 물류 신기술·기반시설·서비스의 실증을 위한 지역·기간·규모
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실증특례 신청 내용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증특례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1. 실증특례 신청의 내용이 법 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
2. 제1항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항에 따른 보완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증특례 신청 내용이 작성된 것이 명백한 경우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자료 보완을 요청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실증특례 부여를 신청한 자가 이를 보완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존에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검토 결과를 회신해야 한다.

⑥ 위원회는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실증특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법 제18조5항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정한 심사기준에 따른다.

⑦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8조제6항에 따라 실증특례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실증특례확인서를 발급해야 하며, 그 사실을 관보에 공고해야 한다.

⑧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실증특례의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실증특례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1. 실증특례 이용현황 및 활용실적이 포함된 결과보고서
2. 실증특례 연장 사유서 및 관련 증명자료
3. 책임보험의 유효기간 연장계획서 또는 손해배상 변경계획서
4. 실증특례확인서 사본
5. 실증특례 연장기간 동안의 실증 내용·방법·일정 등이 포함된 연

장계 획서

6. 그 밖에 실증특례 연장에 필요한 사항

⑨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실증특례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실증특례의 유효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기간 동안 해당 실증특례를 적용하려는 경우에는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실증특례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증특례의 세부기준·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7조(실증특례의 변경) ① 법 제18조제6항에 따라 실증특례를 부여받은 자(이하 “실증특례를 부여받은 자”라 한다)는 실증특례의 내용·조건 등을 변경하려면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실증특례 변경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법 제8조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 외에 실증특례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8조(실증특례의 관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법 제8조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한다)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각각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리·감독을 하게 해야 한다.

1. 실증계획서에 따른 계획 이행 여부
2. 실증특례 부여 조건의 이행 여부
3. 물류사업등과 관련한 물류 신기술·기반시설·서비스에 대한 실증 결과

②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과 관계행정기관의 장 그리고 실증특례를 부여받은 자는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1. 실증특례의 대상인 물류사업등과 관련한 물류 신기술·기반시설·서비스의 명칭 및 내용
2. 법 제18조제5항 후단에 따라 안전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실증특례 지역·기간 또는 규모 등에 붙인 조건(조건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3. 법 제18조제9항에 따른 책임보험 또는 손해에 대한 배상 방안의 내용

③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9조제3항 및 제20조제4항에 따라 법령 정비의 필요 여부를 검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1. 해당 실증특례 대상 물류 신기술·기반시설·서비스 관련 안전사고 및 손해 등의 발생 여부
2. 해당 실증특례 대상 물류 신기술·기반시설·서비스에 대한 실증을 통해 도출된 이용자 편익 정도

3. 해당 실증특례 대상 물류 신기술·기반시설·서비스 출시에 따른
산업적 파급효과 및 기대효과

4. 그 밖에 법령 정비 필요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
20조제4항에 따라 검토한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 경우 그 내용을 공
동부령으로 정하는 검토 결과서로 작성하여 실증특례를 부여받은 자
에게 통지해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
19조제3항 및 제20조제4항에 따라 법령 정비에 착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모두 포함한 법령 정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실증특례와 관련된 정비 대상 법령의 내용

2. 법령 정비 추진일정

3. 그 밖에 법령 정비 계획의 수립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⑥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5항
에 따른 법령 정비 계획에 따라 법령 정비가 완료된 경우에는 그 사실
을 지체없이 실증특례를 부여받은 자에게 법령 정비가 완료되었다는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⑦ 실증특례를 부여받은 자는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법령 정비를 요
청하려는 경우에는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법령 정비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과 관계 행

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에 따른 결과보고서는 제8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실증특례 확인서 사본

2. 실증특례 이용현황 및 활용실적이 포함된 결과보고서와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3. 책임보험의 유효기간 연장계획서 또는 손해배상 변경계획서(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실증특례의 유효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기간 동안 해당 실증특례를 적용받으려는 경우로 한정한다)

4. 그 밖에 법령 정비 필요 여부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출을 요구하는 자료

⑧ 실증특례를 부여받은 자는 법 제20조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결과보고서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실증계획에 따른 목적 달성 여부

2. 실증특례 부여조건 이행 여부

3. 안전사고, 손해배상 등의 발생 여부

4. 물류 신기술·기반시설·서비스에 대한 실증 결과

5. 법령 정비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자료

⑨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7항

에 따라 제출된 결과보고서 등 자료에 대해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19조(실증특례의 취소)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법 제8조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한다)은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실증특례를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공고해야 한다.

제20조(임시허가의 신청 등)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임시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법 제8조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임시허가 대상인 물류사업등에 대한 사업계획서
2. 해당 물류사업등이 법 제2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설명하는 자료
3. 임시허가 대상인 물류사업등의 안전성 검증자료
4. 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임시허가의 적정성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
5. 그 밖에 임시허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제출을 요구하는 자료

② 제1항제1호의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임시허가 대상인 물류사업등의 목적과 개요

2. 해당 물류사업등과 관련된 임시허가의 명칭·내용 및 관련 법령
3. 시장 진출 계획 등이 포함된 사업화 계획
4. 해당 물류사업등과 관련된 임시허가의 구역·기간·규모 및 주요 이용대상자
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임시허가 신청 내용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시허가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1. 임시허가 신청의 내용이 법 제2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
2. 제1항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항에 따른 보완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3. 임시허가 대상인 물류사업등의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것이 명백한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시허가 신청 내용이 작성된 것이 명백한 경우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자료 보완을 요청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임시허가를 신청한 자가 이를 보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존에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검토 결과를 회신해야 한다.

⑥ 위원회는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임시허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정한 심사기준에 따른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계획서 내용의 충실성 및 실현 가능성
2. 해당 물류사업등과 관련된 임시허가 신청자의 재정적·기술적 능력
3. 해당 물류사업등의 혁신성·안전성 및 이용자의 편익
4. 해당 물류사업등과 관련한 시장의 성장 가능성
5. 해당 물류사업등이 국민의 생명·건강·안전 및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
6. 이용자 보호 방안 및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처리 방안
7.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물류사업등의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⑦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임시허가서를 발급해야 하며, 그 사실을 관보에 공고해야 한다.

⑧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1조제5항에 따라 안전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험·검사를 하도록 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 임시허가를 신청한 자는 시험·검사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⑨ 법 제21조제7항 단서에 따라 임시허가의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임시허가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1. 임시허가 이용현황 및 실적이 포함된 결과보고서
2. 임시허가 연장 사유서 및 관련 증명자료
3. 책임보험의 유효기간 연장 또는 손해배상 변경 계획서
4. 임시허가서 사본
5. 임시허가 연장기간 동안 임시허가 대상 물류사업등의 시행 내용 · 방법 · 일정 등이 포함된 연장계획서
6. 그 밖에 임시허가 연장에 필요한 사항

⑩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1조제7항 단서에 따라 임시허가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임시허가서를 발급해야 한다.

⑪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1조제8항에 따라 법령 정비에 착수하거나 법령 정비를 완료한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하고,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받은 자(이하 “임시허가를 받은 자”라 한다)에게 임시허가 대상인 물류사업등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마련되었다는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⑫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시허가의 세부기준

-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1조(임시허가의 변경) ① 임시허가를 받은 자가 임시허가의 내용·조건 등을 변경하려면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임시허가 변경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법 제8조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시허가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2조(임시허가의 취소 등) ① 법 제22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임시허가 부여 당시에 예상하지 못한 사정 변경으로 인하여 임시허가의 취소가 공익상 필요한 경우
2. 국민의 생명·안전에 위해가 되거나 환경을 현저히 저해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임시허가의 취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②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법 제8조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한다)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공고해야 한다.

제23조(책임보험) ① 실증특례를 받은 자 또는 임시허가를 받은 자(이하

“실증특례 또는 임시허가를 받은 자”라 한다)는 법 제18조제9항 본문 및 법 제21조제9항 본문에 따라 책임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물류사업등을 시행하기 전까지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법 제8조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책임보험의 유효기간 만료일은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의 유효기간 만료일 이후여야 하며, 법 제20조제1항, 제5항(실증특례의 유효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기간 동안 해당 실증특례를 적용받으려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법 제21조제7항 단서에 따라 실증특례 또는 임시허가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책임보험을 갱신해야 한다. 이 경우 실증특례 또는 임시허가를 받은 자는 갱신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갱신한 책임보험의 증서 사본을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실증특례 또는 임시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18조제9항 본문 및 제21조제9항 본문에 따라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의 보험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지급 보험금은 제1호 단서를 제외하고는 실손해액을 초과할 수 없다.

1. 사망한 경우에는 1인당 1억5천만원. 다만, 실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2. 부상당한 경우에는 1인당 3천만원
3. 부상에 대한 치료를 마친 후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그 부상이 원인이 되는 신체의 장애(이하 이 조에서 “후유장애”라 한다)가 생긴 경우에는 1인당 1억5천만원

4.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사고당 10억원

④ 하나의 사건으로 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둘 이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실손해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다.

1. 부상자가 치료 중에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

2. 부상자에게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후유장애가 생긴 경우에는 제3항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

3. 제3항제3호의 금액을 지급한 후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제3항제1호의 금액에서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지급한 금액 중 사망한 날 이후에 해당하는 손해액을 뺀 금액

⑤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실증특례 또는 임시허가를 받은 자에게 법 제18조제9항 본문 및 법 제21조제9항 본문에 따른 책임보험의 보험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⑥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손해에 대한 책임보험의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제24조(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의 손해배상 기준 등) ① 실증특례 또는 임시허가를 받은 자가 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18조제9항 단서 및 법 제21조제9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법 제8조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한다)에게 제출해야 하고 물류사업등을 시행하기 전까지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과 별도 협의를 통해 손해에 대한 배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1. 책임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사유서
2.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배상기준·방법 및 절차를 포함한 이용자 손해배상계획서

② 제1항에 따른 이용자 손해배상계획의 배상금액은 제2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금액에 준하는 수준이어야 한다.

제25조(손해배상 절차 등) ① 법 제18조제9항 및 법 제21조제9항의 책임보험 또는 배상 방안에 따라 손해배상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실증특례 또는 임시허가를 받은 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
2. 신청인과 사망자의 관계(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만 해당한다)
3. 사고 발생 일시·장소 등 사고 내용
4. 손해금액 및 산출 기준

②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 신청을 받은 자는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책임보험에 가입한 사실 또는 제24조제1항에 따른 이용자 손해배상 방안을 안내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 신청을 받은 자 중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24조제1항의 이용자 손해배상계획에 따라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④ 실증특례 또는 임시허가를 받은 자는 법 제18조제10항 단서 및 제21조제11항 단서에 따라 배상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거부 사유를 분명히 밝혀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 신청을 받은 자는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법 제8조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한다)에게 손해배상 신청을 받은 사실을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하고, 손해배상을 한 날(제4항에 따라 배상을 거부한 경우에는 거부 통지를 한 날을 말한다)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손해배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제26조(국제물류진흥지역 정보플랫폼 전담기관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정보플랫폼을 설치·운영하는 전담기관(이하 “정보플랫폼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신청방법 등을 정하여 30일 이상 관보,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정보플랫폼 전담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공고가 있는 때에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첨부서류를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정보플랫폼 전담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신청자의 사업수행 능력과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또한 다음 각 호의 시설장비와 인력 등의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1. 시설장비

가. 물류정보 및 이와 관련된 전자문서의 송신·수신·중계 및 보관 시설장비

나. 정보플랫폼을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한 보호 시설장비

다. 정보플랫폼의 정보시스템 관리 및 복제·저장 시설장비

라. 정보플랫폼에 보관된 정보와 전자문서의 송신·수신의 일자·시각 및 자취 등을 기록·관리하는 시설장비

마. 다른 정보플랫폼과의 정보연계에 필요한 시설장비

2. 인력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정보통신기사·정보처리기사 또는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이나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2명 이상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정보통신분야(기술·기능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1명 이상

3. 자본금이 2억원 이상인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일 것

④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정보플랫폼 전담기관을 지정

한 때에는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27조(정보플랫폼의 운영 및 관리) ① 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정보플랫폼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제물류진흥지역 내 입주기업 현황 및 물류시설 정보의 데이터베이스 구축·관리
 2. 「항만법」에 따른 무역항, 「공항시설법」에 따른 공항 및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른 철도 정보시스템과의 실시간 정보 연계
 3. 물류 신기술·서비스 관련 시장 정보의 수집 및 제공
 4. 정보플랫폼 이용자의 인증 및 권한 관리와 보안 시스템의 운영
- ②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플랫폼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장 보칙 및 벌칙

제28조(권한 및 업무의 위임·위탁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소관 사항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규제 신속확인 신청의 접수
2. 법 제1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통보 및 회신문서의 접수
3. 법 제17조제2항 및 제6항에 따른 규제 신속확인을 요청한 자에 대

한 통보

4.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신청의 접수
5.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통보 및 회신문서의 접수
6. 법 제18조제7항에 따른 심사기준의 통보
7.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실증특례 유효기간 연장신청의 접수
8.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규제특례 사항과 관련한 법령의 정비 요청 접수
9. 법 제20조제8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적용 및 사업 결과 접수
10.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임시허가 신청의 접수
11.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통보 및 회신문서 접수
12. 법 제21조제6항에 따른 임시허가 신청자에 대한 결과 통보
13. 법 제21조제7항 단서에 따른 임시허가 유효기간 연장신청의 접수 및 연장 결과 통보
14. 법 제18조제9항 및 법 제21조제9항에 따른 책임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의 접수
15. 법 제18조제9항 단서 및 법 제21조제9항 단서에 따른 책임보험 가입 불가 사유서 및 첨부서류의 접수
16. 제16조제3항, 제18조제9항 및 제20조제3항에 따른 추가 자료의 접

수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수탁자 및 위탁업무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관보에 게재해야 한다.

제29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법 제30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9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채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 4) 위반행위자가 자연재해, 천재지변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 5)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법 제30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 1)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공중(公衆)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제18조제5항 후단 또는 제21조	법 제30조제1호	350	700	1,000

제5항에 따른 조건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나. 제18조제9항 또는 제21조제9항을 위반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인적·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 방안을 마련하지 아니한 자 1) 실증특례 사업 시행일 이후 위반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2) 실증특례 사업 시행일 이후 위반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3) 실증특례 사업 시행일 이후 위반기간이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경우 4) 실증특례 사업 시행일 이후 위반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법 제30조제2호		300 500 700 1,000	
다. 제19조제4항·제6항 또는 제22조제1항·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중지명령을 위반한 자	법 제30조제3호	350	700	1,000
라. 제19조제5항 또는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실증특례의 부여 또는 임시허가가 취소된 후 해당 물류 신기술·기반시설·서비스의 판매·이용 또는 제공 등을 한 자	법 제30조제4호	350	700	1,000

< 의안 소관 부서명 >

해양수산부 항만물류기획과	
연 락 처	(051) 773 - 5755